

VDB | *Loi*

미얀마
세무 가이드북
2019 - 2020

Get to the point.

© VDB LOI CO., LTD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or copyright holder. This publication, and any form of copy of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re-sold, hired out or otherwise disposed of by way of trade, by any person or entity,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or copyright holder.

Published by VDB Loi Co., Ltd November 2019
Version 2.0

Disclaimer: All information is considered correct as of the publication date; however it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For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ne of our advisers or visit our website at www.vdb-loi.com

Contents

약어.....	1
미얀마 과세연도의 변경.....	2
법인세(CIT)	3
세율	3
공제제도.....	3
감가상각.....	3
이월결손금	3
수출입에 대한 2% 선납 소득세.....	3
원천세(WHT)	4
개요	4
원천세 면제.....	4
최저한.....	5
이중과세방지협약(DTA)	5
자본이득세(CGT)	6
개요	6
자본이득세 과세를 위한 최저한	6
세율	6
자본이득세 계산법.....	6
개인 소득세(PIT).....	7
개요	7
거주성.....	7
과세 소득	7
미얀마 거주자를 위한 소득 공제.....	7
세율	8
사회보장기금.....	8
원천이 불분명한 소득	9
임대소득	10
이중과세방지협약	11
상업세(CT).....	12
개요	12
면제 상품 및 서비스.....	12
상업세 과세를 위한 최저한.....	12
등록	12
세율	13

과세 표준	13
매입 상업세와 매출 상업세의 상계	13
특별재화세(SGT).....	14
개요	14
특별재화세 면제	14
특별재화세 과세를 위한 최저한	14
등록	14
세율	14
과세 표준	15
매입 특별재화세와 매출 특별재화세의 상계	15
귀금속세	16
개요	16
납세 준수 사항	17
일정표 및 가산세	17
기타 세금	19
인지세(SD).....	19
재산세(PT).....	19
관세	19
투자인센티브.....	20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인센티브	20
경제특구(SEZ) 인센티브	21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	21
부록1: 세무상 감가상각 기간	22
부록2: 상업세 면제 재화.....	28
부록3: 상업세 면제 서비스	32
부록4: 국내 생산 및 수입에 대한 특별재화세율	34
부록5: 수출에 대한 특별재화세율.....	38
부록6: 선정된 인지세 세율표	39
계약 및 양 당사자.....	39
채권(Bond).....	41
양도증서(Conveyance), 임대, 담보대출 및 재양도증서(Re-conveyance)	41
약속어음	45
이전(Transfer).....	46
부록7: 미얀마 투자법 53조에 따른 구역 분류.....	48

약어

Term	Definition
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CGT	Capital Gains Tax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T	Corporate Income Tax
CT	Commercial Tax
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FTA	Free Trade Agreement
IRD	Internal Revenue Department
ITL	Income Tax Law
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OPF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PIT	Personal Income Tax
PT	Property Tax
SD	Stamp Duty
SEZ	Special Economic Zone
SGT	Specific Goods Tax
UTL	Union Tax Law
WHT	Withholding Tax

미얀마 과세연도의 변경

2019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MOPF") 산하 국세청("IRD")에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과세연도가 기존의 4월1일 - 3월 31일에서 10월 1일 - 9월 30일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납세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2019회계연도" 또는 "과도기") 까지 6개월의 기간을 한 과세연도로 인정합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2018년 연방조세법 발효와 함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 부처, 기관, 및 국영기업의 회계연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연간 세무 신고 마감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연도	연간 세무 신고 마감일	평가 연도
2018년4월1일 - 2019년 3월 31일 (회계연도2018-2019)	2019년 7월 1일	2019년 4월 1일 - 2019년 9월 30일 (회계연도2019)
2019년4월1일 - 2019년 9월 30일 (회계연도2019)	2020년 1월 2일	2019년 10월 1일 - 2020년 9월 30일 (회계연도2019-2020)
2019년10월1일 - 2020년 9월 30일 (회계연도2019-2020)	2020년 12월 31일	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회계연도2020-2021)

법인세(CIT)

세율

현재 법인세율은 2017년 미얀마회사법("MCL")에 따라 설립된 미얀마 법인 및 지점,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법인(예. 2016년 미얀마투자법 및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MIC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은 외국인 소유의 거주 법인)에게 25%가 적용됩니다. 한편, 양곤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게는 2017-2018 과세연도부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미얀마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거주 법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얀마회사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지점으로 등록된 비거주 법인은 미얀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공제제도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지출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본 지출, 개인 지출, 사업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 부적절한 지출, 소득 창출 이외의 목적으로 발생한 지출, 회사 또는 협력 사회 이외의 개인 협회 회원에 대한 지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 비용은 법인세 공제 대상입니다. 자본자산은 자본화하여 정액법(straight-line basis)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하며, 공고 19/2016(소득세법 개정 2차 규정)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자본자산을 취득한 해당 연도에 대해 자산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1년치 감가상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감가상각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 1 (24페이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

소득세법("ITL")에 따르면, 법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 손실을 제외하고 향후 이익과 상계시킬 수 있으며, 최대 연속 3년 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수출입에 대한 2% 선납 소득세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입 상품에 평가된 가치의 2%에 해당하는 선납 소득세 ("AIT")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로는 프로젝트 건설 기간에 수입한 자재 및 장비, MIC의 투자 허가에 따른 생산 초기 3년 동안 수입된 원자재 등이 있습니다. AIT로 징수된 세금은 회계 연도 말에 연간 법인세와 상계가 가능합니다.

원천세(WHT)

개요

MOPF는 2018년 6월 18일에 원천세("WHT") 관련 공고 51/2017을 폐지하는 공고("공고 47/2018")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고 47/2018은 2018년 7월 1일 (FY2018-2019)부터 시행됩니다. 공고 47/2018에 따른 원천세 납부 대상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	거주자	비거주자
	공고 47/2018	공고 47/2018
이자	0%	15%
로열티	10%	15%
재화(국내 구입) -정부 및 관계 기관, 정부 소유 기업에 의한 대금지급	2%	2.5%
재화(국내 구입) -정부 및 관계 기관, 정부 소유 기업 외 나머지에 의한 대금지급	0%	2.5%
서비스(국내 제공 서비스) -정부 및 관계 기관, 정부 소유 기업에 의한 대금지급	2%	2.5%
서비스(국내 제공 서비스) -정부 및 관계 기관, 정부 소유 기업 외 나머지에 의한 대금지급	0%	2.5%

공고 47/2018은 대금 수령인의 공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인이 원천세 대상 대금지급에서 원천세를 공제할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대금지급인이 해당 원천세를 공제하지 못한 경우 IRD는 대금지급인에게 해당 원천세를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인은 거주 납세자일수도 있고 비거주 납세자일수도 있습니다. 원천세 공제 의무는 대금지급인에게 있습니다.

원천세 면제

정부 기관 간의 대금지급, 각 정부 기관 및 국유기업에 대한 지급, 현지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지점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비거주 대출기관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천세 공제에서 면제됩니다. 이전에는 외국계 은행의 미얀마 지점은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15 %의 원천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1일부터 외국계 은행의 미얀마 지점에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한

공고 47/2018에 따르면, 연간 총 대금이 100만 짜트(MMK) 미만인 정부 기관, 부서 및 국유기업에 의한 대금지급인 경우, 원천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비거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최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DTA)

비거주 납세자가 미얀마와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 납세자인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거주 납세자는 거주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발급받은 거주지 증명서를 IRD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DTA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IRD에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본이득세(CGT)

개요

자본자산에는 토지, 건물 및 객실, 차량 및 업무 관련 자본자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식, 채권, 유가 증권 및 유사 상품도 포함됩니다. 자본이득세("CGT")는 미얀마에서 자본자산의 매매, 교환 또는 양도로부터 혜택을 얻는 거주자 및 비거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CGT는 수혜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본자산을 매매, 교환 또는 이전하는 사람은 손익이 없는 경우에도 CG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이득세 과세를 위한 최저한

매매, 교환 또는 이전된 자본자산의 총 매매가가 1,000만 짜트(MMK)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이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

모든 납세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자산 또는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자산 보유회사로부터 얻은 이익 제외)은 10 %이며 미얀마 짜트(MMK) 또는 외화로 과세됩니다.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CGT는 이익을 수취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이득	세율
1	1,000억 짜트(MMK) 이하	40%
2	1,000억 초과 1,500억 짜트(MMK) 이하	45%
3	1,500억 짜트(MMK) 초과	50%

자본이득세 계산법

CGT는 매매, 교환 또는 이전 가치 전액에서 감가상각액, 자산 원가, 자산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모든 자본지출, 자산의 취득, 매매, 교환, 이전 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자본자산을 처분한 연도에는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세(PIT)

개요

미얀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및 기타 보수 지급 시 세금 목적으로 개인 소득세(PIT)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얀마 거주자 (미얀마 시민 및 외국인 포함)인 직원은 전세계 소득에서 소득공제 후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미얀마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일한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거주성

한 과세연도(10 월 1 일부터 다음해 9 월 30 일까지) 동안 미얀마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외국인은 세무 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얀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과세 소득

소득세법에 정의된 급여 소득에는 “급여, 임금, 연금, 보너스, 상금, 및 급여나 임금 대신 또는 추가로 받은 수수료 또는 커미션”이 포함됩니다. 과세 혜택(Taxable benefits)은 소득세법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 할 수 없는 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소득세 면제 항목으로는 연금, 봉사료(팁), 외국 통화로 수령한 비거주 시민의 급여소득 및 국가 발행 복권에서 수령한 돈이 해당됩니다. 2019 년 연방조세법(“UTL”)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480만 짜트(MMK)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얀마 거주자를 위한 소득 공제

- 기본공제: 연간 소득의 20%, 최대 공제액 MMK10,000,000(약 US\$6,667)
- 자녀 1인당 연간 MMK500,000(약 US\$333), 자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해당: 1) 미혼; 2) 소득이 없음; 3)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인 경우 교육기관에서 풀타임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
- 납세자와 동거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MMK1,000,000(약 US\$667)
- 납세자와 동거하는 부모 1인당 MMK 1,000,000(약 US\$667), 시부모[장인,장모] 포함

- 납세자 및 납세자 배우자의 생명보험을 위해 지불한 보험료
- 국세청에서 승인한 저축 기금 적립액
- 사회보장위원회에 직원이 적용한 사회보장기금 (연봉의 2%, 최대 MMK72,000-약US\$48)

*US\$1 = MMK1,500 환율 적용

세율

거주자 및 비거주 직원에 대한 세율은 현재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 납세자의 경우 상위 소득공제 후 전세계 소득에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미얀마원천소득에 공제없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달러 기준 금액은 US \$ 1 = MMK1,500 환율 적용)

개인소득세율		
From MMK (US\$)	To MMK (US\$)	소득세율
1 (0.0007)	2,000,000 (1,332)	0 percent
2,000,001 (1,333)	5,000,000 (3,332)	5 percent
5,000,001 (3,333)	10,000,000 (6,666)	10 percent
10,000,001 (6,667)	20,000,000 (13,332)	15 percent
20,000,001 (13,33)	30,000,000 (20,000)	20 percent
30,000,001 (20,001) 이상		25 percent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는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직원의 월 기여율은 부가 혜택을 포함한 직원의 총 급여(월 최대 급여 MMK300,000으로 상한)의 각 3 %와 2 %입니다. 미얀마 통화 또는 미국달러 중 직원이 받는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최대 월 기여금은 MMK6,000이며 고용주에게는 직원당 MMK9,000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이 불분명한 소득

심사 회피 소득의 경우, 상위 개인소득세 파트에 명시된 공제 이전 소득에 대하여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30%의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시민이 자본자산의 구매, 건설 또는 취득, 또는 신규 사업체 설립 또는 기존 사업 확대에 사용된 수입원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 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의 일부는 원천이 불분명한 소득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원천이 불분명한 소득의 잔액은 아래 표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번호	소득(MMK)	소득세율
a.	1 - 100,000,000	3%
b.	100,000,001 - 300,000,000	5%
c.	300,000,001 - 1,000,000,000	10%
d.	1,000,000,001 - 3,000,000,000	15%
e.	3,000,000,001 이상	30%

임대소득

개인 납세자의 토지, 건물 또는 아파트 임대에서 수입이 창출되는 경우, 그러한 소득은 규정된 세금 감면 혜택 공제 후 10 %의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MIC 또는 협동 조합이 발급한 허가 하에 운영되는 국유 기업, 사업체 및 회사의 경우, 특정 납세자 범주에 대하여 명시된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미얀마는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대한민국 및 라오스, 8 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기타 여러 DTA 협약이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효한 DTA에 의해 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해당 DTA에 따른 혜택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관련 납세자는 소득세가 납부 기일 이전에 IRD에 주장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즉, DTA 혜택 신청은 매 회계 연도의 9 월 30 일 이전에 승인되어야합니다. DTA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상업세(CT)

개요

상업세(“CT”)는 다음 네 가지 활동에 부과됩니다:

- 국내 생산 및 재화의 판매
- 재화의 수입
- 무역
- 용역의 제공

면제 상품 및 서비스

재화의 경우, 상업세 면제항목은 42개(세부 목록은 부록2, 30페이지 참조)로 농산물 및 농산물 관련 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미얀마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는 5%의 상업세가 부과되며 면제되는 서비스항목은 32가지(세부 목록은 부록 3, 35페이지 참조)입니다.

상업세 과세를 위한 최저한

교역, 재화 및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익이 1년 동안 최소 기준액 MMK 5,000만 미만인 납세자는 국세청에 상업세를 부과, 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은 사업을 시작한 달을 포함하여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의미합니다.

등록

수입활동을 제외하고, 상위 언급한 상업세 과세대상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비거주자 포함)은 사업 시작 1개월 전에 CT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에 대한 상업세는 관세와 함께 관세청에서 징수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매출상업세(즉,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청구되는 상업세)에 대해 매입상업세(즉,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따른 상업세 지급)를 상계하려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상업세 목적으로 관련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율

다음은 적용되는 상업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활동	상업세율
수입	5% (면제항목 제외)
국내 생산	5% (면제항목 제외)
무역	5% (면제항목 제외)
수출	0%, 원유(5%) 및 전력(8%) 제외
미얀마 내 용역 제공	5% (면제항목 제외)
부동산 중개업	
- 리스	5%
- 건물 매매	3%
(금으로 만든) 귀금속 수입 및 판매	1%

과세 표준

과세표준은 무역, 용역 제공, 국내 생산 또는 재화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특별상품세(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 판매 또는 서비스 수익을 의미합니다.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은 CIF(비용, 보험, 화물) 가치, 관세 및 특별상품세(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매입 상업세와 매출 상업세의 상계

고정자산 또는 자본자산의 구매 및 건설에 대해 지불한 매입상업세를 제외한 모든 매입상업세는 매출상업세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손상된 재화 및 판매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 지불한 매입상업세는 매출상업세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말에 매출상업세보다 매입상업세가 더 많을 경우, 사용되지 않은 매입상업세를 이월시킬 수 없으며 IRD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입상업세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사업 비용으로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미판매 재화 및 미사용 원자재에 대한 미사용 매입상업세는 IRD의 승인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으로 만든 귀금속 구매시 지불한 매입상업세는 동일한 귀금속 판매 및 수출시 발생하는 매출상업세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특별재화세(SGT)

개요

미얀마는 2016년 4월1일부터 특별재화세("SGT")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화세는 다음 경우에 부과됩니다:

- 특별재화를 미얀마 국내로 수입
- 특별재화의 국내 생산
- 특별재화를 해외로 수출

따라서, 특별재화 수입업자, 생산업자, 수출업자는 특별재화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재화로 분류되는 항목은 14가지 입니다.

특별재화세 면제

특별재화세는 경우에 따라 면제되며, 동일 상태의 재수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특별재화의 수출은 면제됩니다.

특별재화세 과세를 위한 최저한

국산 담배(tobacco), 궤련(cheroots) 및 시가의 경우 MMK 2천만 미만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이를 제외한 기타 특별재화는 최저한이 없습니다.

등록

특별재화 수입업자, 생산업자, 수출업자는 관련 국세청에 등록해야합니다.

세율

특별재화세율은 매년 연방조세법을 통해 발표됩니다. 2018-2019 연방조세법에 따른 국내 생산 및 수입에 부과되는 현재 특별재화세율에 대한 내용은 부록4(3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에 대한 특별재화세율은 부록 5(4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과세 표준

수입에 대한 특별재화세 표준은 특별재화의 양륙비 포함 가치입니다. 가격 범위에 따라 과세되는 국내 생산 특별재화의 경우, 공장판매가 또는 국세청의 정책관이나 운영위원회에 의해 추정 및 명시된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 범위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국내 생산 특별재화의 경우, 국세청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가격 범위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특별재화에 대한 국세청의 가치 판단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유사 품목의 양륙비 포함 가치와 비슷하게 측정됩니다.

매입 특별재화세와 매출 특별재화세의 상계

매입 특별재화세와 매출 특별재화세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귀금속세

개요

모든 보석 및 귀금속은 특정 상품 범주에서 제외되며 미얀마 보석법 (Myanmar Gemstone Law)에 따라 귀금속세가 적용됩니다. 귀금속세는 판매자의 판매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Myanmar Gems Enterprise가 결정한 판매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 보석의 경우 귀금속세는 양륙비 포함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금속세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귀금속 종류	세율
1.	옥 원석	11%
2.	루비, 사파이어 등 기타 보석용 원석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9 %
3.	가공된 옥, 루비, 사파이어 등 기타 보석, 보석과 액세서리 형태 모두 포함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5%
4.	보석으로 만든 상품	5%

납세 준수 사항

미얀마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 입니다.

일정표 및 가산세

세금	납부	신고	가산세
법인세	분기별 납부, 매 분기말 이후 10일 이내	연간신고,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 12월 3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미납세액의 10% - 기한 후 신고: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 선택 - 미지급세금의 5% 및 신고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일수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미지급세금의 1% 씩 추가 - MMK 100,000
원천세	공급업체에 대금지급 후 7일 이내에 납부. 실제로는 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미납원천세액의 10% -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를 체납인으로 간주하고 납세자에게 원천세액을 충당하도록 함
상업세	매월 말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	분기별 신고, 매 분기말 이후 1월 이내 연간신고,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 12월 3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미납세액의 10% - 기한 후 신고: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 선택 - 미지급세금의 5% 및 신고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일수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미지급세금의 1% 씩 추가 - MMK 100,000

세금	납부	신고	가산세
개인소득세	급여지급이후 7일 이내에 납부	연간신고,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 12월 31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미납세액의 10% - 기한 후 신고: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 선택 - 미지급세금의 5% 및 신고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일수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미지급세금의 1% 씩 추가 - MMK 100,000
특별재화세	매월 말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	분기별, 매 분기말 이후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미납세액의 10% - 기한 후 신고: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 선택 - 미지급세금의 5% 및 신고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일수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미지급세금의 1% 씩 추가 - MMK 100,000
자본이득세	자본자산 양도일 또는 매각일 이후 30 일 이내에 납부	자본 거래 신고 - 자본자산 양도일 이후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미납세액의 10% - 기한 후 신고: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 선택 - 미지급세금의 5% 및 신고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일수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미지급세금의 1%씩 - MMK 100,000

기타 세금

인지세(SD)

인지세법(Stamp Act)은 2014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인지세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법입니다. 인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과세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과세문서란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 이전, 소멸 또는 기록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면제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과세문서에 부과됩니다.

문서 집행 시점 또는 집행 후 1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MMK500 또는 체납된 인지세의 세 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율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록6(4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PT)

재산세("PT")와 관련된 기본법은 양곤시개발법2018 이며 해당 법령 관리 및 재산세 징수를 위해 양곤시개발위원회("YCDC")가 설립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양곤 지역 내에 위치한 일부 토지, 건물, 또는 토지 및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만달레이 또는 네피도와 같은 미얀마의 기타 지역의 재산세는 관련 지역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재산세에는 기타세(miscellaneous tax), 조명세(lighting tax), 수도세(water tax), 위생세(sanitation tax)의 네 가지 범주의 세금이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연간 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연 1회 납부합니다. 재산세율과 산출법은 부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부지의 일반 사용자는 YCDC에서 부지에 대한 연간 가치를 평가한 후 매년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관세

미얀마에서는 해양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평가가치에 부과되며 관세청에서 공표한 HS 코드로 나열된 관세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인센티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인센티브

MIC에서 적격 프로젝트에 발급하는 투자 허가는 2016년 미얀마투자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 표는 MIC 투자 허가 혜택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번호	혜택	설명
1	법인세 면제기간(CIT holiday)	MIC 공고 13/2017에 따라 지정된 투자촉진사업분야에만 법인세 면제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면제기간은 투자 구역에 따라 7년(제 1 구역), 5년(제2구역), 3년(제3구역) 동안 주어집니다.
2	수익 재투자시 비과세	수익을 1년 이내에 해당 투자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그와 유사한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3	감가상각	상업적 운영 개시일부터 시작하여 가속 상각이 허용됩니다.
4	동일한 소득세율 적용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거주민과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연구개발비 공제	과세 소득에서 연구개발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는 기계, 장비, 자재, 기계부속품, 건설 자재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	건설기간 또는 사업 확장 기간 동안 관세 및 기타 내국세가 면제됩니다.
7	원재료 및 반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전체 생산품을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내국세가 면제됩니다.
8	수출 시 세금 및 관세의 환급	제품 수출 시, 해당 수출용 제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 및 반제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및 기타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특구(SEZ) 인센티브

경제특구법에 따라 두 개의 주요 구역(Zone)으로 나뉘며, 경제특구 내 사업 투자에는 다음 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면제 혜택	Free/Exempt Zone*	Promotion Zone*
조세 면제기간	사업 운영 시작부터 7년간 법인세 면제	사업 운영 시작부터 5년간 법인세 면제
	두 번째 5년 동안 법인세 50% 면제	두 번째 5년 동안 법인세 50% 면제
	세 번째 5년 동안 법인세 50% 면제 (1년 이내에 수익 재투자 필요)	세 번째 5년 동안 법인세 50% 면제 (1년 이내에 수익 재투자 필요)
관세 및 기타 내국세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기계, 기계부속품, 공장 건축을 위한 건설 자재, 창고 및 사무실, 차량 및 사업에 필요한 기타 장비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수입세 면제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부속품(무역 목적 제외), 공장 건축을 위한 건설 자재, 창고, 차량 및 사업에 필요한 기타 장비에 대해 5년 간 관세 및 기타 내국세 면제 및 다음 5 년 간 50% 면제
		반제품 또는 완제품 수출 시 해당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내국세 환급 신청 가능
이월결손금 공제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 Free/Exempt Zone은 수출용 구역이며 Promotion Zone은 국내 판매 지향 사업을 위한 구역입니다.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

미얀마는 2012 년에 9개의 아세안 회원국("ASEAN")과 아세안중합투자협정("ACIA")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중국, 한국, 호주/뉴질랜드 및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미얀마도 해당 4개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이스라엘,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태국, 쿠웨이트, 라오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2 개국과 양자투자협정("BIT")을 체결했습니다.

부록1: 세무상 감가상각 기간

번호	자본자산 종류	원가 비율		
1	건물			
	a	1등급 철근 콘크리트 건물		
		1	공장 건물	2.5
		2	기타 건물	1.25
	b	2등급 벽돌 건물		
		1	공장 건물	5
		2	기타 건물	2.5
	c	기와 또는 CGI 시트 지붕이 있는 목조 건물		
		1	공장 건물	10
		2	기타 건물	5
d	대나무와 짚으로 만든 건물	수리비는 당기지출로 처리		
2	가구			
	a	잡화	5 (도자기, 유리 제품, 린넨 및 플라스틱 시트에는 감가 상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체 비용은 당기지출로 처리합니다.)	
		b	호텔, 영화관, 아파트에 사용되는 가구, 비품, 식기 및 주방 용품	6.25
		c	호텔, 극장 및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악기	10
3	기계			
	a	잡화	5	
	b	특별 감가상각 비율이 적용되는 항목:		

번호	자본자산 종류	원가 비율
1	정미소	6.25
2	밀가루 제분소	6.25
3	제유 공장	6.25
4	얼음 공장	6.25
5	청량음료 생산 공장	6.25
6	커피 공장	6.25
7	블랙티 공장	6.25
8	양조장	6.25
9	제과 공장	6.25
10	국수 공장	6.25
11	제분소	6.25
12	통조림 공장	6.25
13	무두질 공장	6.25
14	신발 공장	6.25
15	건전지 공장	6.25
16	접착제 공장	6.25
17	비누 공장	6.25
18	양초 공장	6.25
19	로프 제조 공장	6.25
20	알루미늄 주방용품 공장	6.25
21	주석 용기 공장	6.25
22	플라스틱 용기 공장	6.25
23	제재소	6.25
24	생석회 가마(Quicklime kilns)	6.25
25	전자제품 공장	6.25
26	암석제품 공장	6.25
27	제련공장 (철 제련 제외)	6.25
28	선반기계 (Lathe machines)	6.25
29	조선소 기계	6.25
30	콩 껍질 분리 공장	6.25

번호	자본자산 종류		원가 비율	
	c	1	깻묵 공장	10
		2	화학물질 공장	10
		3	표백 및 염색 공장	10
		4	고무제품 공장	
		5	벽돌 가마	10
		6	기와 공장	10
		7	철사 및 못 공장	10
		8	직물 공장	10
		9	소금 가마	10
4	기계 및 장비			
	a	가공전선 (대)	2.5	
	b	1	발전기	6.25
		2	전기신호송신기	6.25
		3	지하 케이블 (대)	6.25
		4	엘레베이터	6.25
		5	일반 가전제품	6.25
		6	금속도금기계	6.25
		7	수리 및 유지보수 기계	6.25
		8	인쇄기	6.25
		9	공기 압축기 및 공기기계	6.25
	c	아이스크림 제조기	10	
	d	영화 제작 및 영사에 사용되는 기계	12.5	
	e	엑스레이 및 치료기기	20	
5	수운			
	a	비전동식 철제 선박	5	
	b	전동식 철제 선박	6.25	
	c	목재 선박	10	
6	도로 수송 수단			
	a	1	오토바이	12.5
		2	자전거 및 삼륜자전거(trishaws)	12.5

번호	자본자산 종류		원가 비율
	b	택시, 트럭, 버스 및 오토바이 외 차량	20
7	잡화		
	a	1 사무용 비품	10
		2 체중계	10
		3 작업장 및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타 기계 및 기구	10
		4 의류 및 모자 제작기	10
		5 가죽 및 캔버스 제품 생산 기계	10
		6 냉동기	10
		7 건설 기계	10
		8 건설 및 가정용 철제기구 제조기	10
		9 광산용 기계	10
		10 수직기 (Hand-weaving looms)	10
	b	1 사탕수수음료 제조기	12.5
		2 수술용 공구	12.5
	c	1 기계화 농업용 기계	20
		2 크레인	20
8	업무용 기타 잡화		
	a	1 비행기	12.5
		2 데이터 편집에 사용되는 기계 및 계산기	10
		3 배우들이 사용하는 용품	20
		4 녹음 및 증폭기	10
		5 병 세척기 (Bottle cleaners)	10
		6 박스 제작기계	6.25
		7 양조장	5
		8 카메라 및 사진용품	10
		9 시멘트 공장	6.25
		10 화학물질 공장	6.25
		11 컴퓨터화된 기계 (Computerized machines)	20
		12 면 압착기 (Cotton crushing machines)	6.25

번호	자본자산 종류	원가 비율
	13 연유 공장	10
	14 복사기	10
	15 철 제련기	5
	16 유리 공장	6.25
	17 살충제 공장	
	18 편물기	
	19 세탁 및 염색업	
	- 일반 장비	10
	- 세탁기	12.5
	20 성냥 공장	5
	21 정유 및 가스 공장	
	- 기계 및 장비	5
	- 파이프라인	5
	- 드릴 장비	20
	- 드릴 플랫폼	10
	- 지구물리학 시험 장비	10
	- 지진 감시 장비	10
	- 기타 시험 장비	10
	22 산소 및 아세틸렌 제조기	5
	23 페인트 및 광택제 제조기	6.25
	24 닭고기 가공 기계	6.25
	25 재봉틀	10
	26 페인트 분무기	10
	27 설탕 제조기	6.25
	28 방수포 (캔버스 또는 플라스틱) 기계	12.5
	29 텔레비전	
	- 안테나	2.5
	- 기타 장비	12.5
	- 수신기	

번호	자본자산 종류		원가 비율
		(a) 일반	10
		(b) 렌트	12.5
	30	기와 제작 기계	10
	31	타자기 (전자 및 수동)	10
	32	우산 제작 기계	10
	33	청소기	10
	34	비디오	
		- 게임기	20
		- 기타 비디오 기기	10
	35	세탁기	12.5

부록2: 상업세 면제 재화

번호	상품 종류
식품류	
1	벼, 쌀, 싸라기, 속나깨, 왕겨, 곡피, 밀기울, 밀 종자, 다양한 종류의 옥수수 및 씨앗
2	다양한 원두 및 쪄낸콩, 콩가루, 겨와 겉껍질, 땅콩(껍질 벗기지 않은 땅콩과 껍질 벗긴 땅콩), 참깨, 니겨 종자, 땅콩 껍묵, 참깨, 목화씨, 쌀겨 등.
3	양파, 마늘, 감자, 향신료 (잎, 과일, 씨앗, 나무껍질) 및 향신료 혼합물 (마살라), 칠리, 칠리 파우더, 강황 및 강황가루, 생강, 익은 타마린드, 각종 소금
4	각종 생과일 및 야채
5	생 찻잎, 말린 찻잎, 말려서 잘게 조각낸 찻잎, 가공 및 포장된 말린 찻잎
6	생선, 생새우, 생고기 및 각종 알류(계란, 오리알 등)
7	땅콩 기름, 참기름
8	사탕수수, 설탕, 인도식 흑설탕(jaggery), 네모난 흑설탕(brown slab sugar), 각종 우유 및 유제품, 연유, 무가당 연유, 각종 분유, 요거트 및 두유
9	각종 액젓(ngan-pya-ye), 각종 건어물 및 건새우, 각종 젓갈 및 새우젓, 민물고기 및 새우가루, 각종 어묵(ngapi)
농업 및 가축 관련 상품	
10	뽕나무잎, 누에고치
11	살아있는 동물, 생선 및 새우, 육상 동물, 수생 동물, 양서류, 알, 배아, 새끼, 동물 표본, 수생 식물과 씨앗, 묘목, 해조류 및 이끼
12	흙, 식물 재배 및 과당 강화에 사용되는 화학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비료, 각종 농업 살충제, 제초제, 곰팡이류, 박테리아, 선충류 및 기타 식물 보호용 농약, 축산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훈증 (모기향 및 스프레이, 쥐약 제외), 동물, 어류 및 새우 약품, 예방수의약품 (농림축산관개부에서 승인한 의약품 및 예방약품 포함) 동물, 생선 및 새우 사료 (애완 동물용 사료 제외).

번호	상품 종류
13	팜유(Palm oil), 해바라기씨, 목화씨, 호박씨, 멜론씨, 캐슈넛, 빈랑나무 열매, 빈랑나무 열매껍질, 양질 작물 및 채소씨 및 식물
14	원면(Raw cotton), (각종) 면, 카타멈(cardamom), 따나카(thanakha) 및 따로 명시되지 않은 농산물, 코코넛 오일 (팜유 아님)
15	코코넛원사(Coconut yarn)
16	장작, 대나무, 나무 줄기 및 가공된 지팡이, 장작 대신 사용하는 고형연료
사무용품 및 학용품	
17	봉랍(Sealing wax), 각종 스탬프(수입인지 포함)
18	국기
19	석판, 석필, 분필, 연필 제작에 사용되는 흑연(Graphite)
20	각종 교과서, 학교 및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및 기술 참고서, 연습장 및 스케치북, 문헌, 잡지, 저널 및 신문, 출판용 종이(40gsm~80gsm 사이), 모든 종류의 연필, 각종 자, 지우개, 연필깎이.
건강 관련 상품	
21	약초
22	꿀, 밀랍
23	엑스레이 필름, 엑스레이 장비, 및보건부에 의해 규정된 기타 의료기기, 의료기기, 솜, 헝겊, 붕대, 병원용 드레싱키트, 마스크, 수술용 장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용 마스크, 각종 상비약, 기타 약품 및 전통약재 (약품 및 전통의료법에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품의약품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의약품)
24	콘돔
종교 및 사회적 물품	
25	목주(귀중한 보석으로 만든 목주 제외), 종교적 복장 (가운 등)
26	소방차, 수색 및 구조 차량, 영구차

번호	상품 종류
운송 관련 물품	
27	전력에너지부에 의해 외국 대사관, 유엔 기구 및 외교관에게 판매되는 연료
28	국제선 및 국내선에 사용되는 제트 연료
29	비행기 및 헬리콥터 엔진, 장비, 액세서리 및 부품
산업용품	
30	표백물질(표백을 위해 염산염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 세제 원재료, 비누 및 생비누 원재료
31	황마 및 다른 종류의 섬유, 고무, 트래거캔스검(tragacanth gum)
32	농업 및 축산 장비; 농업 및 축산 기계 및 예비 부품; 트랙터; 토지 준비 및 수확, 타작 및 건조를 위해 인간 또는 동물 또는 기계 동력과 함께 사용되는 장비; 기계 및 예비부품(자동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자동차 제외); 축산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 및 도구, 기계 및 예비 부품; 가축개량을 위한 인공 수정에 사용되는 정액(동결정액 포함), 정자 및 알, 배아 및 인공 수정용 장비.
33	태양광패널, 태양광전지 제어장치 및 변환기
34	원자재 또는 하위부품; 완제품 포장재; 기계; 계약 제조 기준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해외 고객이 보낸 공구 및 기계와 관련 예비부품 및 추가부품 (재판매목적 없음)
방위 관련 물품	
35	연방의 국방 및 보안 부대에 의해 사용될 무기, 차량, 기계, 자재, 장비 및 예비 부품, 각종 화약, 다이너마이트 및 민간용도의 기타 자재(국방부 승인 물품 한정), 국방부 예산으로 구입하는 군수 물자
보석 및 광물자원 관련 상품	
36	순금 블록(표준 골드바, 골드 블록 및 금화), 연방정부 산하 현지 미얀마보석emporium(Myanmar Gems Emporiums)에서 판매하는 옥, 루비, 사파이어의 보석 원석 및 가공 보석
37	기름 찌꺼기

번호	상품 종류
잡화	
38	면세점에서 출국 승객들에게 판매되는 물품
39	연방정부의 허가 하에 외교부 공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승인하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해당 회원 및 대사 외 직원들이 상호조약에 따라 사용하는 물품
40	국내 또는 외국 기관이 국가에 기부한 현금 또는 성금으로 구매한 물품
41	국가의 요구에 따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에 의해 면세 항목으로 지정된 물품
42	통관제도에 따라 가통관 또는 결함 기준으로 수입된 물품

부록3: 상업세 면제 서비스

번호	서비스 종류
외교 부문	
1	연방정부의 허가 하에 외교부 공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승인하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해당 회원 및 대사 외 직원들이 상호조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국방 부문	
2	국방부 보안 언론에 의한 출판 서비스
종교 및 문화 부문	
3	문화 및 예술 관련 서비스
교통 부문	
4	주차장 렌탈 서비스
5	화물운송 서비스 (기차, 차량, 수상수단, 비행기 및 크레인; 관로를 통한 운송 제외)
6	이사 서비스
7	통행료수령 서비스 (Toll collection services)
8	국내 및 국제 여객항공운송 서비스
9	대중교통 서비스
10	연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우편 서비스
교육 및 정보 부문	
11	교육 서비스
12	도서, 잡지, 저널 및 신문 출판 서비스
보건 부문	
13	의료서비스(성형수술 제외)
14	전통 마사지 및 맹인 마사지 서비스
15	동물의료서비스
16	공중화장실 사용료수령 서비스

번호	서비스 종류
기획 및 재정 부문	
17	생명보험 서비스
18	소액금융 서비스
19	자본시장 서비스
20	미얀마 중앙은행 허가 하에 운영되는 은행 및 금융 서비스
21	세관 및 통관 서비스
22	복권 사업
사회복지재정착부	
23	음식공급(Catering) 장비 렌탈 서비스
24	장례식 서비스
25	육아 및 보육 서비스
산업 및 전기 부문	
26	계약 제조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27	산업형 농업 서비스
28	아직 전국 송전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개인이 소규모로 제공하는 전력 생산 및 공급 서비스
기타 부문	
29	모든 종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 기관에 지불하는 허가 수수료
30	국가의 요구에 따라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에 의해 면세 항목으로 지정된 서비스
31	국내 또는 외국 기관이 연방에 낸 기부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32	대통령실, 연방정부 사무소,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 사무실, 국민의회(Pyithu Hluttaw) 사무실, 민족의회(Amyotha Hluttaw) 사무실, 연방 대법원 사무소, 헌법 재판소, 연방 선거위원회 사무실, 연방 변호사 사무국, 연방 감사원, 연방 민원실, 네펬도 사무국, 연방 부처, 미얀마 중앙은행, 사회보장국, 지방 또는 주 정부기관, 정부 부서 등 부서 간 서비스 (국유경제기업에 제공하거나 국유경제기업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제외)

부록4: 국내 생산 및 수입에 대한 특별재화세율

번호	특별재화 종류	가격 범위	세율
1	(a) 모든 종류의 담배 (Cigarettes)	한 갑(20개비) 당 판매가 MMK 600 까지	한 개비 당 MMK 8
	(b) 모든 종류의 담배 (Cigarettes)	한 갑(20개비) 당 판매가 MMK 601 부터 MMK 800 까지	한 개비 당 MMK 17
	(c) 모든 종류의 담배 (Cigarettes)	한 갑(20개비) 당 판매가 MMK 801 부터 MMK 1,000 까지	한 개비 당 MMK 22
	(d) 모든 종류의 담배 (Cigarettes)	한 갑(20개비) 당 판매가 MMK 1,001 이상	한 개비 당 MMK 25
2	담배(Tobacco)		60%
3	버지니아 담배, 건조		60%
4	셔루트(Cheroot)		셔루트 당 MMK 75 Pyas
5	시가(Cigars)		80%
6	파이프 담배(Pipe tobacco)		80%
7	빈랑 씹는 담배(Betel quid preparations)		80%
8	(a)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200 부터 MMK 1,000 까지	리터 당 MMK 170
	(b)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1,001부터 MMK 2,000까지	리터 당 MMK 424
	(c)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2,001부터 MMK 3,000까지	리터 당 MMK 707

번호	특별재화 종류	가격 범위	세율
	(d)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3,001부터 MMK 4,000까지	리터 당 MMK 990
	(e)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4,001부터 MMK 5,000까지	리터 당 MMK 1,273
	(f)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5,001부터 MMK 6,000까지	리터 당 MMK 1,555
	(g)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6,001부터 MMK 7,000까지	리터 당 MMK 1,838
	(h)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7,001부터 MMK 8,000까지	리터 당 MMK 2,121
	(i)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8,001부터 MMK 9,000까지	리터 당 MMK 2,404
	(j)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9,001부터 MMK 10,000까지	리터 당 MMK 2,686
	(k)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10,001부터 MMK 11,000까지	리터 당 MMK 2,969
	(l)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11,001부터 MMK 12,000까지	리터 당 MMK 3,252
	(m)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12,001부터 MMK 13,000까지	리터 당 MMK 3,535
	(n)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13,001부터 MMK 14,000까지	리터 당 MMK 3,817
	(o)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14,001부터 MMK 15,000까지	리터 당 MMK 4,100

번호	특별재화 종류	가격 범위	세율
	(p) 모든 종류의 주류 (Liquor)	리터 당 MMK 15,001이상	리터 당 가치의 60%
9	모든 종류의 맥주		60%
10	(a)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750 까지	리터 당 MMK 81
	(b)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751 부터 MMK 1,500 까지	리터 당 MMK 244
	(c)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1,501부터 MMK 2,250까지	리터 당 MMK 406
	(d)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2,251부터 MMK 3,000까지	리터 당 MMK 569
	(e)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3,001부터 MMK 3,750까지	리터 당 MMK 732
	(f)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3,751부터 MMK 4,500까지	리터 당 MMK 894
	(g)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4,501부터 MMK 6,000까지	리터 당 MMK 1,138
	(h)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6,001부터 MMK 7,500까지	리터 당 MMK 1,463
	(i)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7,501부터 MMK 9,000까지	리터 당 MMK 1,788
	(j)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9,001부터 MMK 10,500까지	리터 당 MMK 2,113
	(k)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10,501부터 MMK 13,500까지	리터 당 MMK 2,600

번호	특별재화 종류	가격 범위	세율
	(l)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13,501부터 MMK 16,500까지	리터 당 MMK 3,250
	(m) 모든 종류의 와인	리터 당 MMK 16,501이상	리터 당 가치의 50%
11	통나무목재, 벌목		5%
12	(a) Van, Saloons, Sedan, Estate Wagon, Coupe (Double Cap 4 Door Pickup 제외) 1501 CC 부터 2000 CC까지		10%
	(b) Van, Saloons, Sedan, Estate Wagon, Coupe (Double Cap 4 Door Pickup 제외) 2001 CC 부터 4000 CC까지		30%
	(c) Van, Saloons, Sedan, Estate Wagon, Coupe (Double Cap 4 Door Pickup 제외) 4001 CC 이상		50%
13	석유(Kerosene), 가솔린, 디젤, 제트 연료		5%
14	천연가스		8%

부록5: 수출에 대한 특별재화세율

No.	Specific Goods	Tax rate
1	통나무목재, 벌목	10%

부록6: 선정된 인지세 세율표

계약 및 양 당사자

과세문서	인지세율
계약서(Agreement)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a. 환어음 매매 관련	kyat 50
b.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정부 발행 유가 증권 매매 관련	증권 가치의 일부 또는 매 kyat 100,000 당 kyat 25씩 부과, 최대 kyat 10,000 상한
c. 합작계약, 생산 또는 이익분배계약, 시공계약 또는 기타 유사 계약	계약 금액의 1%, 최대 kyat 150,000 상한
d.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의 경우	kyat 300
면제	
계약서(Agreement)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a. No.43에 의해 과세되는 문서 또는 각서 이외의 독점 판매 관련 상품	
b. 대출과 관련하여 미얀마 연방 정부에 입찰 형태로 이루어진 계약	
c. 토지취득법에 의거한 계약	
d. 임대차 계약서, 임대(LEASE) 참조 (NO.35)	
부동산 권리증 예탁, 저당 관련 계약, 즉, 다음과 관련된 계약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1. 시장성유가증권 이외의 모든 재산을 구성 또는 증빙하는 등기 또는 문서	
2. 동산의 저당. 대지급금 또는 대출 방식의 선금 또는 현존/장래 채무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예탁 또는 저당	

과세문서	인지세율
a. 계약 증서 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 또는 요구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경우	확정된 금액에 대해 환어음 [No.13(a)]과 동일한 세금 (요구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 또는 가치의 0.0065%; 그 외의 경우, 해당 금액 또는 가치의 0.5%).
b. 증서 날짜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경우	확정된 금액에 대해 환어음 [No.13(a)]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절반
면제	
재화의 저장 증서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모든 증서에 대한 대응 또는 중복 및 적절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a. 최초 증서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Kyat 1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동일한 세금
b. 기타 모든 사례	kyat 100
면제	
경작인에게 제공된 모든 임대의 상대방, 해당 임대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 경우	
신용장(Letter of Credit) , 즉, 한 개인이 어음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환어음의 결제 보증을 다른 대상에게 위임하는 종류의 금융상품. 보증서. 계약AGREEMENT(No.5) 참조.	kyat 200

채권(Bond)

과세문서	인지세율
회사채 (27항)와 해당 법률 또는 법정 수수료법에 의해 제공된 사채를 제외한, 섹션 2(5)에 의거한 채권	금액 또는 가치의 0.5%
관리인증(ADMINISTRATION-BOND) (No.2), 선박저당채권(BOTTOMRY BOND) (No.16), 세관채권(CUSTOMS BOND) (No.26), 손해배상채권(INDEMNITY-BOND) (No.34), 모험대차채권 (RESPONDENTIA BOND) (No.56), 보증장 (SECURITY BOND) (No.57) 참조.	\
면제	
한 개인이 자선 진료소, 병원 또는 공익 기업체로의 연고모집으로 발생한 국내 수익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된 매월 공시된 총액을 초과하는 채권	

양도증서(Conveyance), 임대, 담보대출 및 재양도증서 (Re-conveyance)

과세문서	인지세율
No.62에 따라 과세 또는 감면된 이전 (TRANSFER)을 제외한, 섹션 2(10)에 의거한 양도증서(CONVEYANCE)	금액 또는 가치의 2% (부동산 관련인 경우 2% 추가)
면제	
미얀마 저작권법에 따른 판권양도. 동업 계약서. 동업 (No.46) 참조	
추가 요금: - 양도담보재산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모든 문서	해당 문서로 인해 보증된 추가 요금과 동일한 대가의 양도증서 (No.23) (2%) 와 같은 관세 적용
a. 원래의 저당권이 제40조 (a)항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될 때 (소유권이 있는 경우)	

과세문서	인지세율
b. 해당 저당권이 제40조 (b)항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될 때 (소유권이 없는 경우)	
i. 추가 요금에 대한 문서 집행 시 해당 문서에 따라 소유권이 주어지거나 주기로 합의한 경우,	총 부과 금액(기존의 저당권과 이미 부과된 추가 요금 포함)에 대해 양도증서 (No.23) (2%)와 같은 관세에서 기존 저당권과 추가요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
ii.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에 따라 지불 또는 전달해야 하는 총 금액에 대해 채권(Bond) (No.15) (0.5%)과 동일한 관세 적용
전대리스(under-lease, sub-lease), 모든 세 또는 전대 계약을 포함한 임대계약 (LEASE)	
a. 고정된 임대료를 내며, 할증료를 지불 혹은 전달하지 않는 임대: -	
i. 임대 조건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임대계약 상 총 지불 혹은 전달 금액에 대하여 채권(Bond) (No.15) (0.5%)과 같은 관세 적용
ii. 임대조건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연 평균 임대료 금액 또는 가치에 대하여 채권(Bond) (No.15) (0.5%)과 같은 관세 적용
iii. 임대조건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연 평균 임대료 금액 또는 가치와 동일한 대가에 양도증서 (Conveyance) (No.23) (2%)와 같은 관세 적용

과세문서	인지세율
iv. 임대조건이 어떠한 기간적 정의를 두지 않은 경우;	임대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첫 10년간 납부할 연 평균 임대료 금액 또는 가치와 동일한 대가에 양도증서 (Conveyance) (No.23) (2%) 와 같은 관세 적용
v. 임대조건이 영속적일 때;	첫 50년간 납부할 임대료 총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대가에 양도증서 (Conveyance) (No.23) (2%) 와 같은 관세 적용
b. 임대료 없이 과태료, 할증료 또는 대지급금에 의해 제공되는 임대	임대계약에 명시된 과태료, 할증료 또는 대지급금 금액 또는 가치와 동일한 대가에 양도증서 (Conveyance) (No.23) (2%) 와 같은 관세 적용
c. 임대료와 더불어 과태료, 할증료 또는 대지급금에 의해 제공되는 임대;	임대계약에 명시된 과태료, 할증료 또는 대지급금 금액 또는 가치와 동일한 대가에 양도증서 (Conveyance) (No.23) (2%) 와 같은 관세와 더불어 과태료, 할증료 또는 대지급금이 지불 또는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했을 세금. 임대계약에 요구되는 증가세 인지가 첨부된 임대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추가 계약에 대한 세금은 kyat 300를 초과하지 않음

과세문서	인지세율
면제	
a. 과태료 혹은 할증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 기간이 1 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 평균 임대료가 kyat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된 경작자 또는 경작 목적으로 집행된 임대계약(식품 또는 음료 제조를 위한 식물 리스 포함).	
b. 현행법에 의해 인정되는 어장 임대	
<p>“부동산권리증 예탁, 저당 관련 계약 (AGREEMENT RELATING TO DEPOSIT OF TITLEDEEDS, PAWN OR PLEDGE) (No.6), 선박저당채권(BOTTOMRY BOND) (No.16), 농작물저당 (MORTGAGE OF A CROP) (No.41), 모험대차채권(RESPONDENTIA BOND) (No.56), 또는 보증장(SECURITY BOND) (No.57)을 제외한 담보 증서 (MORTGAGE-DEED):</p>	
a. 해당 증서에 포함된 자산 또는 자산의 일부를 저당권 설정자 (mortgagor)가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p>양도증서 (CONVEYANCE) (No.23)와 동일한 세금, 증서에 따라 확보된 금액과 동일한 대가의 2% (부동산 관련인 경우 2% 추가).</p>
b. 저당권 설정자가 상기한 바와 같이 제공하거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p>채권 (BOND) (No.15) 과 동일한 세금, 증서에 따라 확보된 금액의 0.5%.</p>

과세문서	인지세율
해설	
임대료 수금 또는 저당잡힌 자산 또는 그 일부의 리스계약을 저당권자에게 위임한 저당권 설정자는 본 조항에 따라 소유권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함;	
c. 원금 또는 1 차 담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담보, 보조 또는 추가 또는 대체 담보, 또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에 대해 추가 보증하는 경우,	
- 보증 총액이 kyat 1,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kyat 50
- 매 kyat 100,000 또는 보증금액의 kyat 1,000,000을 초과하는 부분	kyat 50
면제	
1. 관련 현행법에 따라 대출받은 사람에게 의해 집행된 문서 또는 해당 대출 상환을 보장하는 그들의 보증금에 의해 집행된 문서.	
2. 환어음을 수반한 화환어음약정서 (Letter of Hypothecation)	
양도담보자산 또는 저당권이 소멸된 증서의 재양도(Reconveyance)	최대 kyat 10,000까지 양도증서(CONVEYANCE) (No.23)와 동일한 세금, 저당 대가의 2% (부동산 관련인 경우 2% 추가).

약속어음

과세문서	인지세율
[섹션 2(22) 정의에 따른] 약속어음	
a. 요구불인 경우:	
i. 금액 또는 가치가 kyat 25,000 이하인 경우	kyat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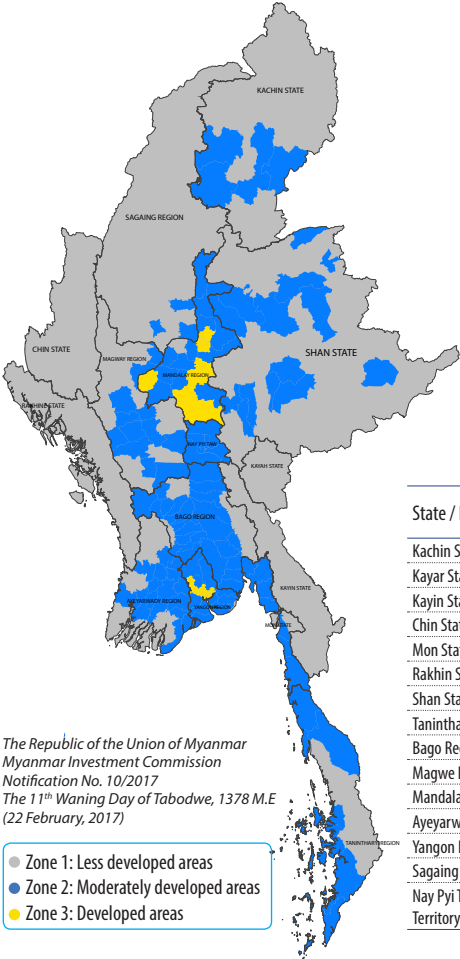
과세문서	인지세율
ii. 금액 또는 가치가 kyat 25,000 초과 kyat 100,000 이하인 경우;	kyat 100
iii. 기타 모든 경우	kyat 150
b. 요구불이 아닌 경우	요구불 이외의 방식인 경우 환어음(No.13)과 동일한 세금 부과 (요구불인 경우, 금액 또는 가치의 0.0065%; 요구불이 아닌 경우, 금액 또는 가치의 0.5%) .

이전(Transfer)

과세문서	인지세율
(대가 유무에 상관없이) 이전 (TRANSFER):	
a.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주식	지분 가치의 0.1%
b. 납세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성유가증권인 사채, 섹션 8에 규정된 사채 제외	책정된 채무 금액의 0.1%
c. 채권, 담보 증권 또는 보험 정책에 의해 확보된 이자	
i. 해당 채권, 담보 증권 또는 정책에 대한 세금이 kyat5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 담보 증권 또는 보험 정책에 따른 세금 부과
ii. 기타 모든 사례	kyat 300
d. 행정법 섹션25에 규정된 모든 자산	kyat 300
e. 대가없이 한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에게 또는 한 수탁자가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신탁재산	300 kyat 또는 이 조항의 (a) 부터 (c)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더 적은 세액 부과

과세문서	인지세율
면제	
배서양도:	
a. 환어음, 수표 또는 약속어음; b.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물품 보증서, 기타 물품 소유권에 대한 상업적 증서; c. 보험 정책; d. 미얀마 연방정부의 국채. 섹션 8 참조	

부록7: 미얀마 투자법 53조에 따른 구역 분류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Notification No. 10/2017
 The 11th Waning Day of Tabodwe, 1378 M.E
 (22 February, 2017)

- Zone 1: Less developed areas
- Zone 2: Moderately developed areas
- Zone 3: Developed areas

State / Region	Zone 1	Zone 2	Zone 3
Kachin State	14	4	
Kayar State	7	3	
Kayin State	7	7	
Chin State	8		
Mon State	2	8	
Rakhin State	17		
Shan State	41	14	
Tanintharyi Region	4		
Bago Region	7	23	
Magwe Region	13	12	
Mandalay Region	2	13	14
Ayeyarwaddy Region	10	17	
Yangon Region		13	32
Sagaing Region	34	3	
Nay Pyi Taw Union Territory		8	



TAX CALENDAR 2019-2020

IRD INTERNAL REVENUE DEPARTMENT

TAXPAYERS ACTION

MONTHLY PAYMENT (COMMERCIAL TAX - CT)
MONTHLY PAYMENT (SPECIFIC GOODS TAX - SGT)

QUARTERLY PAYMENT (INCOME TAX - IT)
QUARTERLY RETURN (SGT)

QUARTERLY RETURN (CT)

ANNUAL RETURN (CT)
ANNUAL RETURN (IT)

TIMELINE

CT, SGT monthly payment due - within 10 days after the end of the month

IT quarterly payment due - within 10 days after the end of the quarter
SGT quarterly return due - within 10 days after the end of the quarter

CT quarterly return due - within 1 month after the end of the quarter

CT, IT annual return due - within 3 months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OCTOBER	2019							2020							2020							2020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31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30	31														
APRIL	2020							2020							2020							2020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30																

Published by IRD

Published by Large Taxpayers' Office



We are a network of leading law and tax advisory firms with offices in Cambodia, Indonesia, Laos, Myanmar and Vietnam.

Our general areas of practice are corporate, finance and disputes.

Our principal specialized areas of practice are energy and infrastructure, real estate, telecom and taxation.

There are three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our approach:

1. We deliver the ultimate in ground connectivity.
2. Our quality is trusted by the most discerning.
3. We never give up.